

사회복지 수급실적 및 무상이전소득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병욱*

〈요 약〉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관련한 논쟁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복지확대와 증세의 문제인데, 사회복지의 확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성 및 발전방향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된 세금부담의 증가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쟁점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사회복지의 세부적 수급실적이 복지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수급액을 반영한 포괄적인 가구 수입의 세부적 원천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13차연도(2015년-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회복지 수급액, 개인 이전소득 및 수증액 자료와 함께 다양한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조세·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등의 세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지원실적의 규모 및 세부적 구성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조세 제도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들 금액의 수준 자체는 해당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제도와 관련한 실증분석 결과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사회복지 수급액이 클수록 역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bwjun@uos.ac.kr

논문접수일 2022년 9월 1일 1차수정일 2022년 10월 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6일

수급자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급액과 총이전소득을 동질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소득과 함께 총이전소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을 사회복지 수급액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보완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가구 총수급액의 개별 항목이 사회복지 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조세부담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장래의 사회복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복지 제도, 조세 제도, 사회복지 수급액, 총이전소득, 재정패널조사 자료

I. 서 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는 사회안정망 강화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는 긍정적 인식과 함께 재정부담의 확대 및 정부에 대한 의존적 경향의 강화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부정적 인식이 공존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제도에 의한 심리적 영향을 반영하는 의존적 경향의 강화와 별개로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관련한 논쟁의 가장 핵심적 사항은 복지확대와 증세의 문제인데(김운태 등, 2013), 사회복지의 확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성 및 발전방향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된 세금부담의 증가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쟁점인 것이다(손병돈, 2016).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 지지하지만,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 반대하는 이들이 더 많고, 특히 증세에서는 자신이 아닌 부자나 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는 넘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나타나는(양재진 등, 2021)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매년 크게 증가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¹⁾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²⁾ 사회복지지출의 바람직한 장래의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거시적인 경제·사회분석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영향에 대한 것이고, 미시적이고 포괄적인 가구 및 가구원 단위의

1)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2년 8월호에 의하면 2022년 상반기의 총수입은 33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조8,000억원 증가한 반면 총지출은 40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조6,000억원 증가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 의하면 공공부문과 법정민간부문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2018년에 223조8,400억원으로 과거 10년간의(2008년-2018년) 연평균 증가율은 9.5%이고, GDP 대비 비율은 7.8%에서 11.8%로 증가했다.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증가한 세금부담에 대한 반대급부인 사회복지 확대의 최종적 성과는 수급자의 경제적 효용을 반영하는 주관적 만족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심리적 측면의 수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고, 사회복지 수급액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증여 및 이전소득(이하 “총이전소득”)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인 경제적 지원실적(이하 “가구 총수급액”)까지 분석대상에 포함하는 연구도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즉,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급액과 총이전소득을 동질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소득과 함께 총이전소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을 사회복지 수급액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보완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가구 총수급액의 개별 항목이 사회복지 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선행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 수급액을 반영한 가구 총수급액 및 가구 총수입의 세부적 원천이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인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13차연도(2015년-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회복지 수급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액 및 기타 정부지원금), 개인 이전소득(타가구 이전소득, 경조사비 소득 및 이혼한 전배우자 이전소득) 및 수증액 자료와 함께 다양한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조세·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등의 세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지원실적의 규모 및 세부적 구성의 영향을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확률효과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조세부담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장래의 사회복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나머지 부분 중 제Ⅱ장은 사회복지 수급액과 관련한 다양한 근거법령 및 제도를 개관하고, 선행연구를 정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제Ⅲ장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가구 총수급액 및 가구 총수입의 세부적 원천의 영향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도출했고, 제Ⅳ장은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II. 제도적 분석 및 연구설계

1. 사회복지 수급액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동법 제3조 제1항),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되,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동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동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동조 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데(동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³⁾, 주거급여⁴⁾, 의료급여⁵⁾, 교육급여⁶⁾, 해산급여⁷⁾, 장제급여⁸⁾ 및 자활급여⁹⁾가 있

-
- 3)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1항).
 - 4)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제1항).
 - 5)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 제1항).
 - 6)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1항).
 - 7)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1. 조산 및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항).
 - 8)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제1항).
 - 9)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항).

다(동법 제7조 제1항)¹⁰⁾¹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별가구¹²⁾ 단위로 실시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3항)¹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동(同)제도의 신청대상은 ①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¹⁴⁾ 그 피부양자 ②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고(동법 제12조),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며(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급여내용은 시설급여¹⁵⁾, 재가급여¹⁶⁾ 및 특별현금급여

- 10)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
- 1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수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사람의 보장기관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제1항).
- 12) “개별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동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하는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 개별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②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③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④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와 같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13) 최근 10년간의(2012년~2021년) 연도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는 아래와 같다.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연도	수급자 수(천명)	수급가구 수(개)	연도	수급자 수(천명)	수급가구 수(개)
2012년	1,394	821,879	2017년	1,582	1,032,996
2013년	1,351	810,544	2018년	1,744	1,165,175
2014년	1,329	814,184	2019년	1,881	1,281,759
2015년	1,646	1,014,177	2020년	2,134	1,459,059
2016년	1,630	1,035,435	2021년	2,360	1,637,569

* 자료 :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

- 1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 15)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2호).
- 16)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

가¹⁷⁾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또한,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데(동법 제3조 제1항),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동조 제3항),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교육 관련 지원금 중에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보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전 소득계층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보육료와 거의 동일해져서 사실상의 무상보육이 이루어진 반면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아직 양자 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차액만큼 가계의 보육료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된다¹⁸⁾.

취학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교육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부채비, 학용품비, 교과서 및 입학금·수업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¹⁹⁾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고등학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및 교육정보화 지원으로²⁰⁾ 구성된다. 다만, 교육급여와 달리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사회복지 수급액 및 무상이전소득과 함께 조세 및 사회복지 제도에 대

입 또는 대여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및 기타재가급여로 구분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17)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를 지급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8) 다만, 가정·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 학비를 지원받는 아동,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9)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내지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내지 제104조의7, 제106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제90조 내지 제92조

20) PC 및 인터넷 통신비

한 인식에 선행연구들은 아래와 같다.

먼저, 사회복지 수급액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전승훈과 박승준(2012)은 가계동향조사의 분석결과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의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비노인가구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리 등(2014)은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분석결과 공적·사적이전소득이 모두 빈곤감소 효과가 있고, 두 가지 이전소득 간에 대체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종예와 금현섭(2018)은 자녀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적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실증분석한 결과 전체 노인가구와 일부 하위집단에서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자녀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했고, 이전소득 의존도가 낮은 청년 동거가구에서 기초연금 수급액의 35%~40% 정도의 사적이전이 구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기존 소득을 부가적으로 보충하지 못하고 사적이전소득을 감소시킴에 따라 당초 의도한 수준의 소득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개별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강정희와 염동문(2014)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분석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만족도가 낮으면서 복지인식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종예와 금현섭(2017)은 증세를 수반하는 경우의 복지 태도에 있어 주관적 세금부담 인식의 역할을 실증분석한 결과 증세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 세금부담의 인식은 복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조세 누진성의 선호는 증세 조건과 무관하게 복지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세금부담 인식의 영향력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더욱 현저한 반면 조세 누진성 선호의 영향력은 고소득층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양종민(2020)은 복지지출과 조세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구조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6%는 재분배와 보험의 기능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에 대체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응답자의 58%는 조세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복지지출 증대를 위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조세 제도에 대한 정부의 신뢰 회복 정도에 따라 증세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 수급액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간의 대체효과에 중점을 둔 경제적 분석을 수행하거나 조세제도와 복지지출에 대한 인식 간의 단편적인 인과관계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이들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이 조세 및 복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측면에서 차별적 공헌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설계

본 연구의 분석내용에 대한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다. 즉, <가설 1>은 개별 경제적 지원혜택의 절대적 수준과 함께 처분가능한 소득에서 동(同)지원혜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또한, <가설 2>는 전체 경제적 지원혜택에서 개별 항목이 차지하는 상대적 구성비율이 <가설 1>의 인과관계와 동질적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은 무상이전 중에서 공적부문의 공헌비율을 반영하고,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사적부문의 무상이전 중에서 일상적 성격분의 공헌비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이들 연구가설은 가구 총수급액 및 가구 총수입의 세부적 원천이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인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이 포괄적인 소득의 구성이 납세자의 다양한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가능성은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Jackson and Milliron(1986)은 납세자의 소득구성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을 확인했고, Tan(1998)은 뉴질랜드 납세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조세공정성 인식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구성이 특히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와 반대로 Hofmann et al.(2017)은 1958년-2012년의 기간 동안 111개국에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구성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추가적으로, 강민조와 전병욱(2018)은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클수록 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했고, 최창기와 전병욱(2022)은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비교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납세자의 위험회피 성향이 낮아지지만, 근로소득 대비 부동산임대소득 및 자본소득의 상대적 비율이 커질수록 동(同)성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실증분석과 구분해서 Fischer et al.(1992)은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은 기본적인 인구통계적 변수(연령, 성별 및 교육수준 등) 및 조세제도의 특성(조세법의 복잡성, 세무조사 위험 및 처벌 규모 등)과 함께 소득구성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체계를 제시했는데,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및 이론적 구성을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인 가구 수입에 대해서도 세부적 구성의 특성이 수혜자의 주관적 인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가설 1>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과 함께 가구 총수입에서 이들 개별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은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 2> 가구 총수급액에서 사회복지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 및 총이전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및 복지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 * 가구 총수급액=사회복지 수급액+총이전소득=사회복지수급액+(이전소득+수증액)
- * 가구 총수입=가구소득+가구 총수급액

이상에서 정리한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개념화하면 식(1)과 같고, 이를 상세하게 기술하면 식(2)와 같다.

$$DEP = \beta_0 + \beta_1 * X + Z\beta + u \quad (1)$$

$$\begin{aligned} TAXPER(WELPER) = & \beta_0 + \beta_1 * SWRATIO + \beta_2 * PWRATIO + \beta_3 * SWCOMP + \beta_4 * PWCOMP \\ & + \beta_5 * LNSW + \beta_6 * LNPW + \beta_7 * RA + \beta_8 * AGE + \beta_9 * FEMALE \\ & + \beta_{10} * EDU + \beta_{11} * LNHNA + \beta_{12} * METRO + \sum_j \beta_j * IND_j + u \quad (2) \end{aligned}$$

- 단, DEP : 종속변수
 X :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설명변수
 Z :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통제변수들
 TAXPER : 조세부담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정)
 WELPER : 복지수준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정)
 SWRATIO :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PWRATIO : 총이전소득 비율
 SWCOMP :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
 PWCOMP : 이전소득 상대비율
 LNSW : 사회복지 수급액의 자연로그값²¹⁾
 LNPW : 총이전소득의 자연로그값
 RA : 가구의 위험회피성향(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정)
 AGE : 가구의 연령
 FEMALE : 가구의 성별(여성인 경우 1인 더미변수)
 EDU : 가구의 교육 수준(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1인 더미변수)
 LNHNA : 가구순자산의 자연로그값
 METRO : 수도권 가구인 경우 1인 더미변수
 YEAR : 연도더미
 u : 오차항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는 조세부담 및 복지 수준에 대한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가구의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TAXPER)은 재정패널조사의 9차년도 이후에 포함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同)설문은 “귀하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세금을 어느 정도 납부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① 매우 많이 납부한다 ② 약간 많이 납부한다 ③ 적절하게 납부한다 ④

21) 금액 단위 자료들은 모두 만원 단위로 표시하고, 일반적인 체감효과를 반영하여 원래 값 대신 자연로그 값으로 측정하였다. 자연로그 값의 측정에서 원래 값이 “0”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했고, 음수인 경우에는 절대값의 자연로그 값에 “-1”을 곱해서 계산했다.

약간 적게 납부한다 ⑤ 매우 적게 납부한다 의 선택형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1부터 5까지 측정되는 답변이 클수록 조세부담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조세부담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표준화를 위해 원래 답변(x)에서 1을 뺀 후에 다시 4로 나눈 값($\{(x-1)/4\}$)으로 TAXPER을 정의해서 0부터 1사이에서 0.25 단위로 계산되는 값 중에서 높은 값일수록 조세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가구의 복지 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WELPER)도 역시 재정패널조사의 9차연도 이후에 포함된 설문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同)설문은 “귀하는 본인이 납부했던 세금과 비교해 볼 때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의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해 ①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② 약간 높은 수준이다 ③ 적절한 수준이다 ④ 약간 낮은 수준이다 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의 선택형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1부터 5까지 측정되는 답변이 클수록 복지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조세부담을 고려한 혜택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표준화를 위해 원래 답변(x)에서 1을 뺀 후에 다시 4로 나눈 값($\{(x-1)/4\}$)으로 WELPER을 정의해서 0부터 1사이에서 0.25 단위로 계산되는 값 중에서 높은 값일수록 복지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명변수인 경제적 지원실적의 규모는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 금액과 함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들 경제적 지원실적의 상대적 비중으로 측정했고, 단순한 지원규모보다 경제적 지원실적의 상대적 구성이 더욱 관심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실적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수급실적의 비율을 추가적으로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수급액은 재정패널조사의 가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²²⁾ 수급액,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특별현금급여수급액, 자녀양육 관련 지원금²³⁾, 출산 관련 지원금²⁴⁾, 아동수당, 교육 관련 지원금²⁵⁾ 및 기타 현물 지원의²⁶⁾ 합계액이고, 총이전소득은 개인 이전 소득²⁷⁾ 및 타가구원으로부터의 수증액의 합계액으로 측정했다. 또한,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 비율(SWRATIO 및 PWRATIO)은 가구총소득 및 전체 경제적 지원실적(사회복지 수급액 · 총이전소득)의 합계액에 개별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전체 경제적 지원실적에서 개별 항목이 차지하는 구성비율

22)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자가가구 집수리 및 월세가구 임대료) 및 교육급여

23) 보육비, 교육비, 급식비, 출산관련 지원금, 다자녀지원금 및 아동수당 등이고, 직접 지원받은 금액 외에 공제 또는 보조받은 금액 및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받은 금액도 포함한다.

24) 출산지원금 및 임신출산진료비 등

25) 보육비, 교육비, 급식비, 다자녀 지원금 및 양육수당 등

26) 상품권(교환권 및 바우처 등), 식료품 및 기타 재화 등

27) 타인에게 경조사비용으로 받은 금액과 함께 용돈, 생활비, 학비 지원 등의 용도로 지급받은 금액 및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지원받은 양육 · 생활비의 합계액이다.

이다.

통제변수에서 위험회피성향(RA)은 재정패널조사의 10차연도 및 11차연도의 가구원 조사에 포함된 설문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했는데, 이러한 개인적 성향은 단기간에 불변일 것으로 가정해서 9차연도에는 10차연도와 동일한 값을 적용하고, 12차-13차연도에는 11차연도와 동일한 값을 적용하였다²⁸⁾. 구체적으로, 동(同)설문은 1억원의 투자자금으로 수익율이 2%인 예금에 투자하는 대안(투자안 A)과 수익율이 5% 및 -1%일 가능성이 각각 50%인 펀드에 투자하는 대안(투자안 B)에 대하여 각각 얼마씩 투자할지에 대하여 투자안 A-투자안 B의 순으로 ① 0원-1억원 ② 1,000만원-9,000만원 ③ 2,000만원-8,000만원 ... ⑩ 9,000만원-1,000만원 ⑪ 1억원-0원의 선택형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기대수익율이 2%로²⁹⁾ 동일한 무위험자산(투자안 A) 및 위험자산(투자안 B) 간의 투자자금 배분과 관련해서 전액을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대안이 ①이고, 전액을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대안이 ⑪이며, ②-⑩은 분산투자하는 대안인 것이다. 따라서, 1부터 11까지 측정되는 답변이 클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표준화를 위해 원래 답변(x)에서 1을 뺀 후에 다시 10으로 나눈 값($\{(x-1)/10\}$)으로 RA를 정의해서 0부터 1사이에서 0.1단위로 계산되는 값 중에서 높은 값일수록 위험회피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적 단순한 방식의 RA의 정의는 프레이밍 효과로 인한 분석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³⁰⁾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가구별 특성인 가구순소득(LNHNA, 가구 총소득에서 가구 총지출을 차감한 값의 자연로그값) 및 수도권 거주 여부(METRO, 가구의 거주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1인 더미변수)를 포함했고, 가구주의 특성인 가구주 연령(AGE), 성별(FEMALE, 여성인 경우 1인 더미변수) 및 교육 수준(EDU,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1인 더미변수)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분석기간(20015년-2019년)에 대하여 개별 연도별 특성이 납세자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연도 더미변수(YEAR)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식(1)의 연구모형의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재정패널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걸쳐 불균형 패널자료에 대해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확률효과 패널회귀분석(random-effect panel regression)을 채택했고, 종속변수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로버스트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28)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을 RA 값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차-11차연도(2016년-2017년)로 제한하더라도 다음 장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29) 투자안 B의 경우에는 $5\% \times 50\% + -1\% \times 50\% = 2\%$

30) 전병욱과 김준원(2016), 전병욱(2018a), 전병욱(2018b), 전병욱과 기은선(2018), 심해린과 전병욱(2018), 전병욱(2019), 강민조와 전병욱(2019), 신유정과 전병욱(2019), 전병욱(2020a), 전병욱(2020b), 심해린과 전병욱(2020), 이경희와 전병욱(2020) 및 전병욱과 박나라(2022)를 참고하였다.

III. 실증분석의 결과

1. 기술통계량

분석대상 표본의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정 한 종속변수인 가구주의 조세 제도 및 복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TAXPER 및 WELPER)의 평균은 각각 0.4034 및 0.5936이고,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의 평균은 각각 22,168원³¹⁾ 및 40,120원이며³²⁾, 주된 설명변수인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SWRATIO), 총이전소득 비율(PTRATIO),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SWCOMP) 및 총이전소득 상대비율(PTCOMP)의 평균은 각각 0.0159, 0.0434, 0.3627 및 0.9858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량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P1	Q1	중위수	Q3	P99
TAXPER	26,233	0.4034	0.1687	0.00	0.25	0.50	0.50	0.75
WELPER	26,233	0.5936	0.2084	0.25	0.50	0.50	0.75	1.00
SWRATIO	26,735	0.0159	0.0593	0.0000	0.0000	0.0000	0.0000	0.3636
PWRATIO	26,735	0.0434	0.1068	0.0000	0.0000	0.0000	0.0000	0.4339
SWCOMP	9,565	0.3627	0.4669	0.0000	0.0000	0.0000	1.0000	1.0000
PWCOMP	6,515	0.9858	0.1167	0.0038	1.0000	1.0000	1.0000	1.0000
LNSW	27,253	0.7961	1.9995	0.0000	0.0000	0.0000	0.0000	6.6438
LNPW	27,253	1.3893	2.5573	0.0000	0.0000	0.0000	0.0000	8.0064
RA	26,226	0.7002	0.3025	0.00	0.50	0.80	1.00	1.00
AGE	27,253	55.4906	14.8511	25	45	55	66	87
FEMALE	27,253	0.2280	0.4196	0	0	0	0	1
EDU	27,251	0.3541	0.4782	0	0	0	1	1
LNHNA	27,253	8.5544	4.5552	-9.6264	8.6995	9.8147	10.5996	12.5610
METRO	27,253	0.4138	0.4925	0	0	0	1	1

* TAXPER : 조세제도에 대한 가구주의 인식(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정), WELPER : 복지제도에 대한 가구주의 인식(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정), SWRATIO :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PWRATIO : 총이전소득 비율, SWCOMP :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 PWCOMP : 이전소득 상대비율, LNSW : 사회복지수급액의 자연로그값³³⁾, LNPW : 총이전소득의 자연로그값, RA : 가구주의 위험회피성향(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정), AGE : 가구주의 연령, FEMALE :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1인 더미변수, EDU : 가구주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 1인 더미변수, LNHNA : 가구순자산의 자연로그값, METRO : 수도권 가구인 경우 1인 더미변수

31) $e^{0.7961} \times \text{만원}$

32) $e^{1.3893} \times \text{만원}$

33) 자연로그값들의 단위는 만원이고, 원래값이 “0”이면 자연로그값도 편의상 “0”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 0부터 1까지의 값으로 측정된 위험회피성향의 평균은 0.7002이고, 가구 순자산의 평균은 5,189만원이며³⁴⁾, 가구의 연령(AGE), 여성 가구의 비율(FEMALE),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가구의 비율(EDU), 가구순자산 및 수도권 가구의 비율(METRO)의 평균은 각각 55.5세, 22.8%, 35.4% 및 41.4%로 나타났다.

연속형 변수인 개별 변수의 평균과 중위수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총이전소득 상대비율 및 가구순자산은 중위수가 평균보다 커서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left-skewed distribution)를 나타낸 반면 그 밖의 변수들은 모두 평균이 중위수보다 커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right-skewed distribution)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회귀모형에 사용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변수들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1. TAXPER	1						
2. WELPER	-0.25**	1					
3. SWRATIO	0.12**	-0.11**	1				
4. PWRATIO	0.14**	-0.08**	-0.06**	1			
5. SWCOMP	-0.08**	0.00	0.60**	-0.60**	1		
6. PWCOMP	0.04**	-0.04**	0.02	-0.41**	0.04**	1	
7. LNSW	0.04**	-0.05**	0.71**	-0.09**	0.95**	-0.03*	1
8. LNPW	0.12**	-0.06**	-0.05**	0.82**	-0.90**	-0.36**	-0.05**
9. RA	0.16**	0.01	0.04**	0.10**	-0.12**	0.03*	-0.02**
10. AGE	0.20**	-0.14**	0.03**	0.36**	-0.52**	0.12**	-0.23**
11. FEMALE	0.14**	-0.08**	0.11**	0.25**	-0.19**	0.06**	-0.03**
12. EDU	-0.18**	0.13**	-0.05**	-0.15**	0.25**	-0.10**	0.08**
13. LNHNA	-0.07**	0.01	-0.13**	-0.01*	-0.15**	-0.04**	-0.11**
14. METRO	-0.07**	0.18**	-0.02**	-0.07**	0.13**	-0.05**	-0.01
변수	8	9	10	11	12	13	14
8. LNPW	1						
9. RA	0.09**	1					
10. AGE	0.32**	0.24**	1				
11. FEMALE	0.18**	0.11**	0.18**	1			
12. EDU	-0.14**	-0.16**	-0.38**	-0.21**	1		
13. LNHNA	0.00	-0.01	0.07**	-0.09**	0.09**	1	
14. METRO	-0.11**	0.02**	-0.08**	-0.03**	0.15**	0.05**	1

* 변수의 정의는 <표 1>과 같음.

* “*” 및 “**”는 각각 5% 및 1%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34) $e^{8.5544} \times \text{만원}$

개별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 간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표 2>의 분석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다른 설명변수들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정확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이 조세 및 복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의 회귀분석에서 개별 설명변수들의 회귀계수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2. 단일변량분석의 결과

조세 및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표 3>은 주된 설명변수인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SWRATIO), 총이전소득 비율(PTRATIO),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SWCOMP) 및 총이전소득 상대비율(PTCOMP)의 평균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구분할 경우 종속변수인 조세 제도 및 복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TAXPER 및 WELPER)에 유의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3>과 같이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 상위 가구와 함께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 하위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 전자는 가처분소득에서 대체로 세금부담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취득한 총이전소득의 비중이 클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자는 총이전소득 중에서는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 및 잠재적인 증여세의 부담과 무관하게 일체의 세금부담 없이 정부에서 지급받은 사회복지 수급액의 비중이 클수록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작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에 반해, 복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이상의 분석결과와 반대로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 하위 가구와 함께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 상위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 후자는 총이전소득 중에서 정부에서 지급받은 사회복지 수급액의 비중이 클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클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자는 가처분소득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총이전소득의 비중이 클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클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단, 본 연구의 분석대상 가설과 관련한 이상의 단일변량분석의 결과는 개별 종속변수를 주된 설명변수들을 기준으로 상·하위 가구의 해당 여부에 따라 구분할 경우 서로 독립적이라는 제한적 가정 하의 분석이고, 종속변수에 미치는 다른 통제변수들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엄밀한 분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이 조세 및 복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의 회귀분석의 결과를 관찰해야 할 것이다.

〈표 3〉 주된 설명변수의 수준에 따른 차이분석

기준	구분	TAXPER			WELPER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SWRATIO	상위	3,821	0.4193	0.0029	3,821	0.5682	0.0034
	하위	22,412	0.4007	0.0011	22,412	0.5979	0.0014
	Z값 ³⁵⁾ -p값		5.97	0.0000**		-8.14	0.0000**
PWRATIO	상위	5,083	0.4523	0.0023	5,083	0.5611	0.0027
	하위	21,150	0.3916	0.0012	21,150	0.6014	0.0014
	Z값-p값		23.64	0.0000**		-13.03	0.0000**
SWCOMP	상위	20,605	0.3930	0.0012	20,605	0.6002	0.0015
	하위	5,628	0.4415	0.0022	5,628	0.5692	0.0027
	Z값-p값		-19.64	0.0000**		10.12	0.0000**
PWCOMP	상위	26,141	0.4035	0.0010	26,141	0.5934	0.0013
	하위	92	0.3832	0.0191	92	0.6304	0.0206
	Z값-p값		1.06	0.2912		-1.79	0.0766

* “*” 및 “**”는 각각 5% 및 1%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3. 회귀분석의 결과

먼저, <표 4>는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이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1)열과 (2)열은 설명변수의 구성을 다르게 한 것인데, 식(1)에서는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들 금액의 수준 자체는 해당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석결과 중에서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SWRATIO) 및 총이전소득 비율(PWRATIO)의 유의적 영향은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수급액은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에서 자유롭고, 일체의 잠재적 세금부담 없이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가구 총수입에서 사회복지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주관적 효용이 증가해서 정부의 일상적 재정 운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35) Z값은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상위 가구의 종속변수 값이 하위 가구보다 크거나 또는 작다는 가설에 대하여 계산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평균이 μ_1 , μ_2 인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 표본 평균, 표본표준편차가 각각 n_1 , $\bar{X}$, S_1 과 n_2 , $\bar{Y}$, S_2 이고 두 표본의 크기가 모두 큰 경우 ($n_1 \geq 30$, $n_2 \geq 30$)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bar{X} - \bar{Y}) - (\mu_1 - \mu_2)\} \div (S_1^2 \div n_1 + S_2^2 \div n_2)^{0.5} \sim N(0, 1)$ 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소득 및 수증액으로 구성되는 총이전소득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제공받는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처분소득이고, 사회복지 수급액과 다르게 정서적인 부채 의식과 예상치 않은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들과 무관하게 역시 수령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가구 총수입에서 총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현행 조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의 수준(LNSW 및 LNPW)이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수급자들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가구 총수급액을 정부의 재정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서 않는 반면 동(同)수급액이 가구소득을 얼마나 보충하는지의 정도에 따라 조세 제도의 공정성과 관련한 해당 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잠재적인 부정적 인식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위험회피성향(RA)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성향의 납세자가 현실의 조세 제도에 대해 보다 수용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고, 성별이 여성이고,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고, 순자산이 작고, 수도권 외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역시 조세 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일반적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식(2)에서는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자의 분석결과는 단일변량분석과 같이 총이전소득 중에서는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 및 잠재적인 증여세의 부담과 무관하게 일체의 세금부담 없이 정부에서 지급받은 사회복지 수급액의 비중이 클수록 이와 같은 조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자의 분석결과는 납세자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을 총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이전소득과 수증액의 상대적 비율과 무관하게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증여와 타가구 이전소득의 상대적 규모 및 잠재적 과세 가능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양자의 질적 차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통제변수들의 분석결과는 가구의 수도권 소재 여부가 조세 제도의 긍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비유의적인 것을 제외하면 식(1)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4〉 확률효과 패널회귀분석의 결과(종속변수 : TAXPER)

설명변수	(1)				(2)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SWRATIO	0.2558	0.0346	7.39	0.0000***				
PWRATIO	0.0960	0.0184	5.20	0.0000***				
SWCOMP					0.0451	0.0120	3.75	0.0000***
PWCOMP					0.0041	0.0191	0.22	0.4150
LNSW	-0.0002	0.0009	-0.19	0.4260				
LNPW	-0.0008	0.0007	-1.12	0.1320				
RA	0.0381	0.0037	10.31	0.0000***	0.0444	0.0075	5.92	0.0000***
AGE	0.0013	0.0001	12.63	0.0000***	0.0020	0.0002	10.57	0.0000***
FEMALE	0.0300	0.0032	9.32	0.0000***	0.0340	0.0053	6.45	0.0000***
EDU	-0.0263	0.0030	-8.69	0.0000***	-0.0186	0.0066	-2.82	0.0025***
LNHNA	-0.0012	0.0003	-4.81	0.0000***	-0.0016	0.0005	-3.01	0.0015***
METRO	-0.0206	0.0027	-7.49	0.0000***	-0.0042	0.0054	-0.78	0.2170
Constant	0.3158	0.0069	45.83	0.0000***	0.2657	0.0223	11.94	0.0000***
Rho	0.2826				0.3034			
Overall R ²	0.0904				0.0946			
Wald Chi ²	1,324***				364.16***			
n	25,536				6,130			

* 변수의 정의는 <표 1>과 같음.

* “*”, “**” 및 “***”은 각각 10%, 5% 및 1%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다음으로, <표 5>는 사회복지 수급액 및 총이전소득이 복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1)결과 (2)열은 설명변수의 구성을 다르게 한 것인데, 식(1)에서는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사회복지 수급액도 클수록 역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SWRATIO) 및 총이전소득 비율(PWRATIO)의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조세 제도에 대한 <표 4>의 분석결과와는 상반된 것이고, 일반적 예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사회복지 수급액은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총수입에서 사회복지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상반된 분석결과는 해당 비율이 높

은 저소득 가구는 복지 제도를 통한 경제상태에 대한 개선의 기대가 매우 높았던 반면 실제 사회복지 수급액의 수준이 조세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액에 대한 이러한 실망감이 부정적 인식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수급액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이 노인가구의 기존 소득을 부가적으로 보충하지 못해서 당초 의도한 수준의 소득증가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한 금중예와 금현섭(2018)과 같이 사회복지 수급액의 현실적 수준은 매우 불충분하고, 금중예와 금현섭(2017)과 같이 복지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세금부담의 인식의 영향력은 사회복지의 주된 수급자인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더욱 현저한데,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반대급부인 조세부담을 고려한 사회복지 수급액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 불만족이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총이전소득은 국가로부터의 직접적 보조 대신 정서적인 부채 의식이 수반되는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이어서 사회복지 수급액과의 성격상 차이가 있어서 복지 제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비교적 무관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표 5>의 분석결과는 가구 총수입에서 총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 가구는 역시 복지 제도를 통한 경제상태에 대한 개선의 기대가 매우 높았던 반면 실제 수령한 사회복지 수급액의 수준이 조세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가구에 실망감을 유발시켰고, 이것이 다시 부정적 인식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수급액과 총이전소득의 기본적인 성격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별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과 함께 총이전소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을 사회복지 수급액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보완적 관계로 취급하는 대신 양자를 비교적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가구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과 구분해서 사회복지 수급액의 수준(LNSW)은 복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총이전소득의 수준(LNPW)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별 수급액이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표 4>와 구분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복지 수급액이 복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부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사회복지 수급액이 높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복지 제도를 통한 경제상태의 개선 기대가 컸던 반면 실제 사회복지 수급액의 수준이 조세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아서 수급액에 대한 이러한 실망감이 이러한 분석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총이전소득의 복지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긍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저소득 가구에서 높은 총이전소득의 상대적 비율과는 구분해서 해당 수령액은 소득수준과 비교적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황에서 수령액이 높은 가구의 경우에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의 향상으

로 인해 정부의 일상적 복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제변수들 중에서 위험회피성향(RA)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보수적 성향의 납세자가 현실의 복지 제도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낮고, 성별이 남성이고,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고, 순자산이 작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역시 복지 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구 순자산을 제외하면 <표 4>와 상반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조세 제도와 복지 제도에 대한 개별 납세자의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5> 확률효과 패널회귀분석의 결과(종속변수 : WELPER)

설명변수	(1)				(2)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회귀계수	표준오차	t값	p값
SWRATIO	-0.2225	0.0378	-5.89	0.0000***				
PWRATIO	-0.0781	0.0213	-3.67	0.0000***				
SWCOMP					-0.0715	0.0146	-4.90	0.0000***
PWCOMP					0.0058	0.0214	0.27	0.3925
LNSW	-0.0024	0.0011	-2.16	0.0155**				
LNPW	0.0021	0.0009	2.33	0.0100**				
RA	0.0251	0.0046	5.47	0.0000***	0.0282	0.0091	3.09	0.0010***
AGE	-0.0013	0.0001	-9.73	0.0000***	-0.0027	0.0002	-11.64	0.0000***
FEMALE	-0.0146	0.0042	-3.49	0.0000***	-0.0257	0.0066	-3.90	0.0000***
EDU	0.0252	0.0040	6.33	0.0000***	0.0154	0.0087	1.77	0.0385**
LNHNA	-0.0007	0.0003	-2.24	0.0125**	0.0001	0.0007	0.10	0.4615
METRO	0.0617	0.0035	17.80	0.0000***	0.0438	0.0066	6.68	0.0000***
Constant	0.6332	0.0089	71.06	0.0000***	0.7291	0.0266	27.43	0.0000***
Rho	0.3439				0.3509			
Overall R ²	0.0714				0.0841			
Wald Chi ²	1,050***				363.32***			
n	25,536				6,130			

* 변수의 정의는 <표 1>과 같음.

* “*”, “**” 및 “***”은 각각 10%, 5% 및 1%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다음으로 식(2)에서는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자의 분석결과는 총이전소득 중에서는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경제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수급액의 비중이 클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을 것이라는 예상과 상반된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식(1)의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과 유사하게 총이전소득에서 사회복지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 가구는 복지 제도를 통한 경제상태에 대한 개선의 기대가 매우 높았던 반면 실제 사회복지 수급액의 수준이 조세부담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액에 대한 이러한 실망감이 부정적 인식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자의 분석결과는 납세자가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을 총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이전소득과 수증액의 상대적 비율과 무관하게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증여와 타가구 이전소득의 상대적 규모 및 지급 동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양자의 질적 차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통제변수들의 분석결과는 가구의 순자산이 복지 제도의 긍정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비유의적인 것을 제외하면 식(1)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9차-13차연도(2015년-2019년) 재정패널조사 자료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회복지 수급액(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액 및 기타 정부지원금), 개인 이전소득(타가구 이전소득, 경조사비 소득 및 이혼한 전배우자 이전소득) 및 수증액 자료와 함께 다양한 가구 및 가구원별 특성과 조세·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등의 세부적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주관적 만족도에 미치는 경제적 지원실적의 규모 및 세부적 구성의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조세 제도와 관련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먼저,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들 금액의 수준 자체는 해당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수급액은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일체의 잠재적 세금부담 없이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가구 총수입에서 사회복지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이러한 주관적 효용이 증가해서 정부의 일상적 재정 운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소득 및 수증액으로 구성되는 총이전소득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제공받는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처분소득이고, 사회복지 수급액과 다르게 정서적인 부채 의식과

예상치 않은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들과 무관하게 역시 수령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가구 총수입에서 총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현행 조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분석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수급자들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가구 총수급액을 정부의 재정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서 않는 반면 동(同)수급액이 가구 소득을 얼마나 보충하는지의 정도에 따라 조세 제도의 공정성과 관련한 해당 인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잠재적인 부정적 인식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조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분석결과는 총이전소득 중에서는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 및 잠재적인 증여세의 부담과 무관하게 일체의 세금부담 없이 정부에서 지급받은 사회복지 수급액의 비중이 클수록 이와 같은 조세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을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자의 분석결과는 납세자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을 총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이전소득과 수증액의 상대적 비율과 무관하게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증여와 타가구 이전소득의 상대적 규모 및 잠재적 과세 가능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양자의 질적 차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복지 제도와 관련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먼저, 사회복지 수급액 비율 및 총이전소득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고, 사회복지 수급액이 클수록 역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수급액은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구매력을 증가시켜서 경제상태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총수입에서 사회복지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상반된 분석결과는 해당 비율이 높은 저소득 가구는 복지 제도를 통한 경제상태에 대한 개선의 기대가 매우 높았던 반면 실제 사회복지 수급액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액에 대한 이러한 실망감이 부정적 인식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총이전소득은 국가로부터의 직접적 보조 대신 정서적인 부채 의식이 수반되는 타인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라서 사회복지 수급액과의 성격상 차이가 있어서 복지 제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비교적 무관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상반되는 분석결과는 가구 총수입에서 총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 가구는 역시 복지 제도를 통한 경제상태에 대한 개선의 기대가 매우 높았던 반면 실제 수령한 사회복지 수급액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가구에 실망감을 유발시켰고, 이것이 다시 부정적 인식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복지 수급액과 총이

전소득의 기본적인 성격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별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과 함께 총이전소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을 사회복지 수급액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보완적 관계로 취급하는 대신 양자를 비교적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수급액 상대비율이 높을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반면 이전소득 상대비율은 조세 제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자의 분석결과는 총이전소득 중에서는 대인관계의 심리적 부담에서 자유롭게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경제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수급액의 비중이 클수록 복지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을 것이라는 예상과 상반된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총이전소득에서 사회복지 수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 가구는 복지 제도를 통한 경제상태에 대한 개선의 기대가 매우 높았던 반면 실제 사회복지 수급액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액에 대한 이러한 실망감이 부정적 인식의 분석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후자의 분석결과는 납세자가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을 총이전소득을 구성하는 이전소득과 수증액의 상대적 비율과 무관하게 취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증여와 타가구 이전소득의 상대적 규모 및 지급 동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령자의 입장에서는 양자의 질적 차이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수급자의 입장에서 무상으로 취득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 수급액과 총이전소득을 동질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의 소득과 함께 총이전소득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 빈곤을 사회복지 수급액을 통해 완화시키려는 보완적 관계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가구 총수급액의 개별 항목이 사회복지 제도와 함께 반대급부의 경제적 부담을 결정하는 조세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주관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선행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조세부담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장래의 사회복지 제도 운영과 관련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민조 · 전병욱. 2018. “납세자의 소득원천과 지출행태가 조세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제18권 제4호 : 67-92.
- 강민조 · 전병욱. 2019. “Factors that affect taxpayers’ perceptions of tax fairness : Evidence from Korea”. 세무학연구 제36권 제1호 : 143-168.
- 강정희 · 엄동문. 2014.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제30권 제2호 : 319-351.
- 금중예 · 금현섭. 2017.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1권 제1호 : 1-29.
- 금중예 · 금현섭. 2018. “공적이전소득에 따른 사적이전소득의 변화 :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2권 제4호 : 25-53.
- 김윤태 · 유승호 ·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연구 제45호 : 183-212.
- 손병돈. 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 · 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6권 제4호 : 5-34.
- 신유정 · 전병욱. 2019.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이 납세준용 관련 주관적 인식 및 의사결정 방식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36권 제4호 : 9-35.
- 신혜리 · 남승희 · 이다미. 2014.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빈곤감소효과 및 두 이전소득 간의 관계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1호 : 117-138.
- 심해린 · 전병욱. 2018.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결제수단별 공제율 차등이 결제수단 배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 303-332.
- 심해린 · 전병욱. 2020. “노후리스크에 대한 인식과 절세효과가 개인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37권 제1호 : 119-151.
- 양재진 · 윤성원 · 장우윤. 2021.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 1-28.
- 양종민. 2020. “한국 사회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 : 정부의 책임성, 증세, 조세시스템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제68호 : 79-112.
- 이경희 · 전병욱. 2020. “기대여명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사적연금 수요 분석”. 리스크관리연구 제31권 제2호 : 91-131.
- 전병욱. 2018. “가구별 종교가 절세효과 및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기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19권 제1호 : 33-78.
- 전병욱. 2018.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이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보유에 미친 영향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 157-206.
- 전병욱. 2019. “유류의 가격구조가 휘발유 · 경유차량 간의 유형 선택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 심리적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6권 제4호 : 95-120.
- 전병욱. 2020. “가구별 특성 및 조세제도 등의 외생적 요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세무학연구 제37권 제4호 : 103-130.
- 전병욱. 2020. “절세효과가 기부금 지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2호 : 61-91.
- 전병욱 · 기은선. 2018. “가구별 기부금 지출액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조세정책적 시사점”. 세무학연구 제35권 제3호 : 157-197.
- 전병욱 · 김준원. 2016. “가구주의 한계세율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 63-109.
- 전병욱 · 박나라. 2022. “가계부채 및 세금부담이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매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주택도시금융연구 제7권 제1호 : 5-27.
- 전승훈 · 박승준. 2012.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효과 :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대한 비교 분석”. 경제연구 제30권 제2호 : 63-92.
- 최창기 · 전병욱. 2022. “소득의 유형 및 세부적 구성이 납세자의 위험회피성향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4호 : 9-35.
- Fischer, C.M., M. Wartick and M.M. Mark. 1992. Detection probability and taxpayer complianc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11 : 1-46.
- Hoffmann, E., M. Voracek, C. Bock and E. Kirchler. 2017. Tax compliance across sociodemographic categories : Meta-analyses of survey studies in 111 countrie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63(1) : 63-71.
- Jackson, B.R. and V.C. Milliron. 1986. Tax compliance research : Finding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Accounting Literature* 5 : 125-161.
- Tan, L.M. 1998. Taxpayers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tax system-A preliminary study. *New Zealand Journal of Taxation Law and Policy* 4(2) : 59-70.
- 국가법령정보. law.go.kr.
-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
-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

Research on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s and Transfer Incomes on Taxpayers' Perception in Tax and Welfare System

Byung Wook Jun^{*}

— <Abstract> —

Based on the finance panel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welfare benefits and transfer incomes on taxpayers' perception in tax and welfare system.

Regarding taxpayers' perception in tax system, as the proportion of either welfare benefits or transfer incomes out of total household income ("TI" hereafter) increases, positive recognitions on tax system grows bigger, while the level of each earning has insignificant effect on it. Moreover, as the component ratio of welfare benefits out of total household free receipts ("TR" hereafter) increases, positive recognitions on tax system grows bigger, while that of transfer incomes out of TR has insignificant effect on it.

Regarding taxpayers' perception in welfare system, as the proportion of either welfare benefits or transfer incomes out of TI increases, negative recognitions on welfare system grows bigger, and the level of welfare benefits also has negative effect on it. Moreover, as the component ration of welfare benefits out of TR increases, negative recognitions on welfare system grows bigger, while that of transfer incomes out of TR has insignificant effect on it.

This study is expected to give help to make up for shortcomings of previous studies, and to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on the management of future welfare system under practical tax burdens.

<Key words> welfare system, tax system, welfare benefits, transfer incomes, finance panel data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bwjun@uos.ac.kr